



산안법 제31조 제1항에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산안법 제31조에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매월 2시간씩 4회(주1회)에 걸쳐 실시했는데(산안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심의 의결한 회수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실시전 사내 통신망 등 여러가지 방법 및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일자 및 시간을 통보함) 부득이 일부 근로자가 해당교육일자 및 시간에 월차 및 연차, 그 외 경조나 휴가, 기타 출장 등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근로자에 대해 계속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 사업주가 계속하여 실시하는데도 미이수자가 해당 월을 넘겼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산안법 제31조 제1항에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에게 [총략]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서 교육을 1회에 걸쳐 실시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회에 걸쳐 (단, 산안위원회 회의에 심의의결을 하였음) 실시하였다면 '실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정기교육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연·월차의 사용 등으로 특정일시를 정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공사방식은 전체분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연단위(차수)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합니다. 안전관리비 자체도 전체분 안전관리비와 차수분(차수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책정) 안전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가 5차분공사이며, 전체분 공정율은 50%정도이고 안전관리비 사용율은 약 65%정도입니다. 문제는 5차 시행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공정상 공사비에 비하여 안전관리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올 12월 24일 5차분 준공에 있어 안전관리비가 약 200만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차수분 안전관리비에 대해 다음 차수로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총 공사의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차수별로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사용계획 및 정리 등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집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의 모든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가 꼭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본도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바 없으나, 통상 경비항목은 다른 비목의 증빙서류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항목, 물품의 실제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이 증빙서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발주처에 제출하면 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서류가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